



발행처 _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044)204-5797

인 쇄 _ 닥터조이 02)2771-1041

※ 책자의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6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C O N T E N T S

I .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	02
II .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04
III .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05
IV . 피해주민 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	07
V . 풍수해보험료 지원	19
VI .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20
VII .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21
VIII . 기타 지원 사항	23
IX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5



I.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금액

-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전파 480천원, 반파 240천원, 침수 56천원/1인당)
 - ※ 산출기초(8,000원/1인/1일,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 차지하는 생계수단
 -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 **읍·면·동사무소 10일 이내**에 관할 해당부서에 제출
- ※ 인명피해는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

지원절차



피해신고요령

신고 기간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 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동과 이·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www.safekorea.go.kr)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이·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II.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응급구호세트(남/여) / 취사구호세트

▶ 응급구호세트(남) : 1인 기준

구분	담요	침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규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PVC 38cm×28cm×10cm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구분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안대
규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1회용	면	면	140cm×200cm 우레탄, 방수	대, 중, 소	우레탄	쿠션
수량	1켤레	1벌	1개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응급구호세트(여) : 1인 기준

구분	담요	침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규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PVC 38cm×28cm×10cm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구분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안대	
규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면	면	140cm×200cm 우레탄, 방수	대, 중, 소	우레탄	쿠션	
수량	1켤레	1벌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생리대 1조								

※ 의류(간소복·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남105, 여100), 중(남100, 여95), 소(남95, 여90)로 구분, 대·중·소 구성 비율은 3:5:2로 함

▶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명 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가방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 개별구호물품은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젓병),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가뭄대비), 쿨 스카프(폭염대비), 전기매트(한파대비), 응급의약품 세트(반창고 등 10종) 등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

▶ 응급구호세트(남)



▶ 응급구호세트(여)



▶ 취사구호세트



Ⅲ.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제26조, 「의연금품 관리·운용 규정」

지원 대상·금액

구 분	의연금(만원)	비 고
○ 사망·실종자(1인)		
• 세대주	최대 1,000	
• 세대원	최대 500	
○ 부 상 자(1인)		
• 세대주	최대 500	
• 세대원	최대 250	
○ 생계지원	최대 100	세대당 지급
○ 주택파손(등)		
• 전파·유실	최대 500	세대당 지급
• 반 파	최대 250	세대당 지급
• 침 수	최대 100	세대당 지급

※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연금 지원 금액 결정

지원절차

- 피해주민 신고 후 지자체에서 의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면 구호협회(배분위원회)에서 지원금액·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 후 이재민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지원대상 재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

Ⅳ.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간접지원이란?

- 자연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을 지원

원스톱 서비스란?

- **한번의 피해신고만**으로 해당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간접지원 서비스를 받도록하는 서비스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 **지원내용** : 간접지원 13개 분야

- ① 건강보험료 경감
- ② 국민연금 납부예외
- ③ 통신요금 감면
- ④ 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
- ⑤ 국세 납세유예
- ⑥ 전기요금 감면
- ⑦ 복구자금 용자
- ⑧ 도시가스요금 감면
- ⑨ 지역난방요금 감면
- ⑩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⑪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⑫ 상하수도요금 감면
- ⑬ 농기계수리 지원

지원절차



① 건강보험료 경감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국민연금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대상·범위

건강보험료 경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 경감(하나만 발생시 3개월)
*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건강보험료 경감률]

구분	적용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재난등급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1~5	6~55	56~100
경감률	50%	40~49%	30~39%

- * 건강보험료 경감은 월보험료 최대 50% 초과할 수 없음
- * 소상공인은 재난등급에 상응하는 피해금액에 따라 경감률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의거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피해발생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예외

지원절차



③ 전기요금 감면 ④ 통신요금 감면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대상·범위

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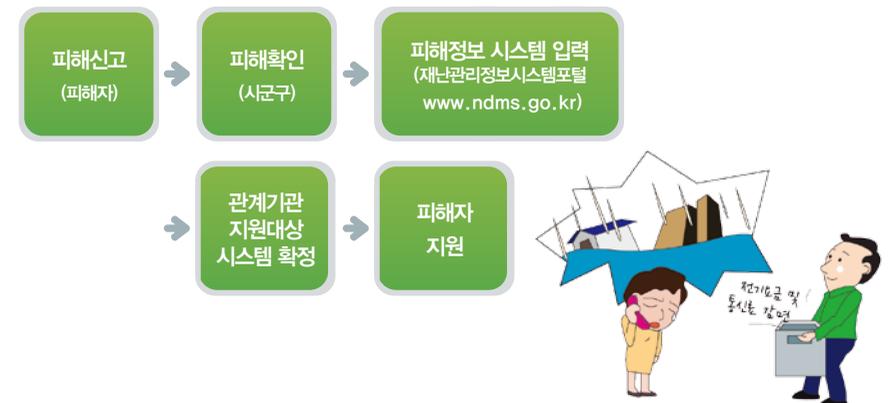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전기요금 면제 및 감면

-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 : 1개월분 전기요금 면제
- 침수 및 파손 건축물 :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 감면(주택용은 100% 감면)
- 전기요금 납기연장 : 멸실, 침수 및 파손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
-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 요금 감면(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
- 건축물 멸실 및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면제

통신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유선통신요금 감면
-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 감면 내용(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절차



5 국세 납세유예 6 지방세 감면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2조

대상·범위

-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재난피해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세 납세유예

- **(신고·기한연장)**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 감면
- **(납기유예)** 납세자의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위독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기한연장(6개월에서 최대 1년)
- **(면제)** 재난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

지원절차



7 재해 복구자금 융자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융자 대상 및 조건

소관부처	피해시설	취급은행	상환기간	이율(고정금리)
농식품부	농경지, 농작물등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해양수산부	어선, 수산생물 등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산림청	산림작물, 시설 등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국토교통부	주택 (전파, 유실, 반파)	농협,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2.5% (변동금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5%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4%

※ 재해복구(주택, 비닐하우스) 융자금 지원시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상환기간까지 유지)

지원절차



7-1 재해 농가·어가·임가 경영자금 지원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축산법」 제3조, 「농축산 경영자금 운용 규정」
- 「수산업법」 제86조, 「영어자금 운용요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재해피해 농·어·임가



지원조건 및 금액

소관부처	지출대상	상환조건	
		상환기간	이율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경영자금) 10백만원 이내 (축산경영자금) 10백만원 이내 (재해대책경영자금) 장관이 결정한 금액 이내	1년간 (1년 연장 가능) * 다만,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 가는 3년 연장가능	연 3.0%
해양수산부	자담분(재해대책본부 심의·확정)+피해복구비 의 20% 이내,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자)	1년 (1회 연장 가능)	연 3.0%
산림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용자 부담률 이외 재해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	2년 거치 3년 상환	연 3.0%

지원조건 및 금액



7-2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 피해에 한함

지원내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특별보증(90% 보증, 수수료 0.5%)

지원절차



- ※ 피해기업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희망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재해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7-3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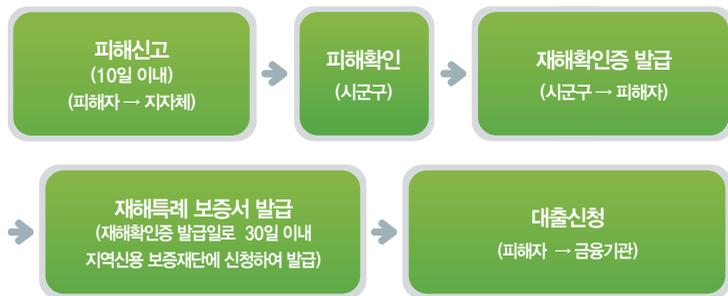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 피해에 한함

용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5%)
-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수수료 0.1%

지원절차



※ 순수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



8 도시가스 9 지역난방요금 감면

근거법령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산업부), 천연가스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 열공급규정(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대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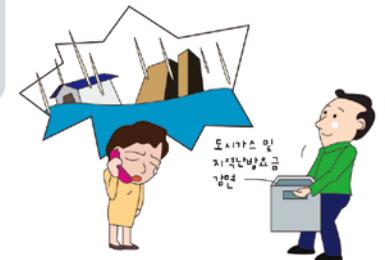
도시가스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택피해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
 -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주택 1,680원
 -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지역난방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기계실(열사용시설)의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
-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로부터 열공급을 재개하는 전일까지 해당일수에 대하여 기본요금 전액 감면

지원절차



10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근거법령

- 「보훈기금법」 제5조,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제7조

대상·범위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급

피해구분	세목 등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인명 피해	사망(실종)	사망 또는 실종	500
	부상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		
주택 피해	전 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
	반 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50
	침수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00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			
기타 재산 피해	대규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재난등급* 1~80등급)	50
	소규모	피해금액이 3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재난등급 81~100등급)	20
공동이용 시설피해	대규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재난등급 1~80등급)	500
	소규모	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재난등급 81~90등급)	250

- ※ 보훈처장(지청장)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1개월 연장 가능)
- ※ 인명·주택 및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절차



11 상하수도요금 감면 12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근거법령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상하수도 조례
- 측량수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부 예규)

대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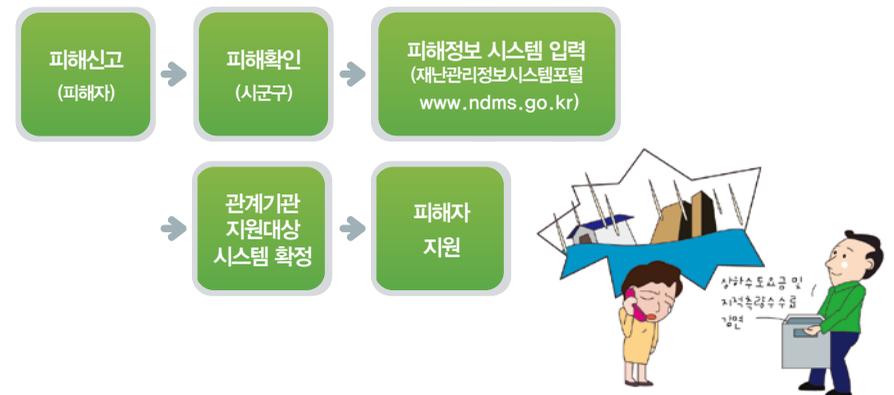
상하수도요금 감면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자
-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지원, 전액면제 등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
- ※ 지자체 조례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경우 지원 가능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
- ※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되나 원스톱으로 지원(재난 발생일로 2년 이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시 수수료 50% 감면**

지원절차



13 농기계수리 지원

지원근거·기준

- 없음(민간자율 지원)

처리기관

- 주관·처리기관 : 농기계회사, 시·군·구 농업부서
- 협조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시·군·구 재난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회사에 지역별 순회 서비스센터 운영 협조 요청
 - (시·군·구 재난부서) 피해신고 시 안내, 수리업체 연락체계 구축·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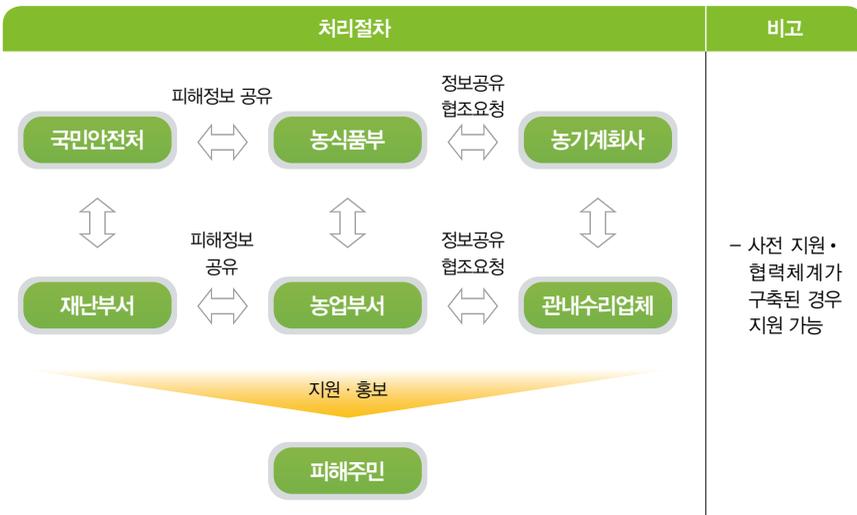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사람

처리시기

- 즉시 시행
 - ※ 사전 농기계회사·관내수리업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된 경우 가능

처리방법



V.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풍수해보험법」 제7조



대상·범위

- **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가입자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지원
 -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 **참여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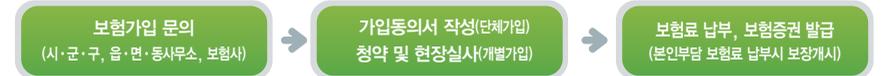
단체가입(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가입창구 문의 및 가입동의서 제출

개별가입(주택 및 온실 소유자)

- 풍수해보험 5개 참여보험사에 문의 및 가입신청
 - ※ 문의전화(02-2100-5103~7) / 5103(동부화재), 5104(현대해상), 5105(삼성화재), 5106(KB손보), 5107(NH농협손보)

가입절차



지급절차



VI.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지원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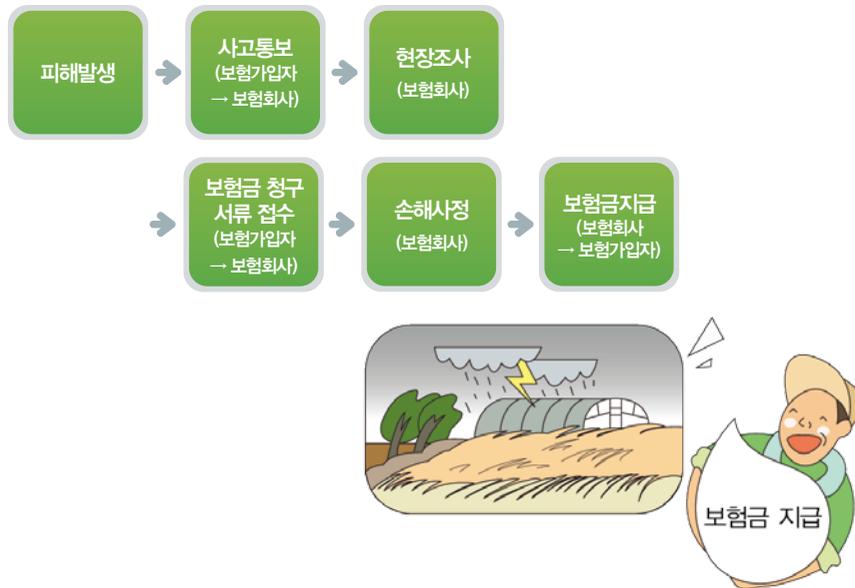
지원 대상·금액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지원대상 : 보험목적물(농작물 46, 가축 16, 양식수산물) 가입자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0% 지원(국고 보조기준)
- 지원주체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시·도, 시·군·구

신청방법

-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소재지 관할 농협(농작물·가축보험), 수협(양식수산물보험), LIG 컨소시엄(가축보험)에 보험가입 청약
- ※ 가입문의 전화 : 농협 1644-8900, LIG 02-6900-3427, 수협 02-2240-2999

지급절차



VII.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2
- 「재해구호법」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피해자 가족, 목격자, 수습복구활동 참여자 등 재난 간접피해자 포함

지원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행을 예방
- ※ 정신·신경 의학적 치료분야는 보건·의료분야로 연계

지원 및 신청방법

- (지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담대상자 발생 시 조기 상담활동 전개
- (신청) 인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전화, 방문 상담신청

지원절차



- ※ 재난심리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

연번	센터명	연락처	주소	비고
1	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2-2181-31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1-801-407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3	대구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3-550-7117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4	인천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2-810-1334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로 함박외로 220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5	울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2-210-952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6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1-230-16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7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33-255-9597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8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43-262-711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9	대전·세종·충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42-220-0144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10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3-280-583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11	광주·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2-523-0545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12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3-250-9835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13	경상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55-278-272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1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064-758-35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봉로 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044-204-5819) 및 시·도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

VIII. 기타 지원 사항 (초등돌봄교실 운영)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과정 제2013-7호(교육부 고시)
- 「201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17개 시·도 교육청)

지원개요

- 재난과 관련한 초등학교 휴업 중에도 학교 여건 및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봐주는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및 내용

- **오후 돌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방과후~17시까지)
- **저녁 돌봄**
오후 돌봄 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17시~22시)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3~4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비용부담

-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무상, 그 외 학생은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급·간식비 개인자부담

주요 돌봄 활동

- **(단체활동)** 다양한 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 **(개인활동)** 숙제, 일기쓰기, 독서, 기타 활동 등

신청방법

- 아이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문의 신청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

근거 법령

-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병역법」 제49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5조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포함)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로서 의무 이행기일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 ※ 자원봉사자 등 재난수습 지원인력도 가능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 ※ 국방부에서 지원을 결정한 경우 가능

지원내용

- 60일 범위 내에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포함) 입영(소집)일자 연기
 - ※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60일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의무 이행기일 연기 가능
- 당해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면제(병무청)
- 당해연도의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국방부)

신청절차



IX.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피해신고 기간은?

- I.A.**
-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I.A.**
- **시설피해**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www.safekorea.go.kr)



Q3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I.A.**
- 반파 미만의 소규모 주택피해,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동산
 - 무허가시설,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이며,
 - 다만, 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임.
 - ※ 무허가·신고 주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

▶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

지원항목	지원기준	주관 / 처리기관	협조기관	근거법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	재난등급(소상공인은 피해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3개월) * 인적·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국민건강보험법 제 75조 보험료 경감고시 (복지부) 제7조
국민연금 납부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통신요금 감면 특별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기본원칙) *통신사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SKT KT LGU+	미래부, 국민안전처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특별재난 지역 지원기준(통신사업자연합회)
지방세 감면	감면, 면제, 납기유예 재산세 등 일괄감면 및 납기연장 (최장 6개월)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행정자치부/ 시·군·구 세무담당부서	시·군·구 재난부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92조 등
국세 납세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 최장 9개월 연장	국세청 / 지방국세청·세무서	국민안전처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법인세법 제58조 및 소득세법 제58조
전기료 감면 특별	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감면 - (멸실)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 (침수) 1개월분의 50% 면제	한국전력공사	시·군·구 재난부서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복구자금 융자	피해시설	취급은행	상환기간	이율
	농경지, 농작물 등	농협	5년까지 10년상환	연리 1.5%
	어선, 수산 생물 등	수협	5년까지 10년상환	연리 1.5%
	산림직물, 시설 등	산림조합	5년까지 10년상환	연리 1.5%
	주택	농협 등	3년까지 17년상환	연리 2.5%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까지 3년상환	연리 2.5%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까지 3년상환	연리 2.4%	
		국도·농림·해수부, 산림·중기청 / 시·군·구 주택·농업·어업·산림·경제부서 / 지방중소기업청 / 금융기관	시·군·구 재난부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청 고시)

지원항목	지원기준	주관 / 처리기관	협조기관	근거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 특별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국민안전처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부) 천연가스공급규정(가스공사 내부규정)
지역난방 요금 감면 특별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열공급 중지일~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자원부, 국민안전처	열공급규정 제26조(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 다름	환경부 / 시·군·구 재난부서	시·군·구 재난부서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상수도 급수·하수도 사용조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예규)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 시 50만원 등 * 원스톱으로 지원하거나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	국가보훈처 / 지방보훈관서	국민안전처	보훈기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재해위로금 지급규정(보훈처 훈령)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수리 필요한 경우 유·무상 수리 * 민간자율지원	농기계회사 / 시·군·구 농업부서	시·군·구 재난부서	관계법령 없음(민간 자율 지원)

※ **특별** : 특별재난지역에만 지원

Memo



A large, teal-colored rectangular area representing a memo paper. It features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The bottom right corner is folded over, and a shadow is cast beneath the paper.